



## < 12월 주요 상담사례 >

### ○ (등록)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?

- “저작물”은 ‘인간’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(저작권법 제2조 제1호)을 말하며,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인간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.
-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‘**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**’이라 한다.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.
-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 등이 있을 수 있다.
  -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
  - ②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을 수정·증감 등 ‘추가 작업’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
  - ③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
-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을 ‘**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**’이라 한다. 이 경우 ‘인간의 사상·감정의 표현’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,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.
- 만약, 등록신청명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등록한다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(법 제136조 제2항제2호).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으로 등록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.

#### ◆ 참고 안내서

1. 위원회 누리집>자료> 발간자료>조사·연구>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(국/영문)  
※ [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\(국/영문\) 바로가기](#)
2. 위원회 누리집>자료>발간자료>조사·연구>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분쟁예방 안내서  
※ [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분쟁예방 안내서 바로가기](#)
3. 위원회 누리집>자료>발간자료>조사·연구>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등록 안내서  
※ [생성형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등록 안내서 바로가기](#)

## < 시스템(챗봇)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>

순위	질의
1	저작권 등록 문의
2	저작권법 상담사례
3	등록 절차
4	신규 권리 등록
5	등록 일반
6	저작권(이용 일반 및 제한)
7	저작권(일반저작물)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?
8	저작물 조회
9	전화상담 운영시간
10	어떤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\*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\* 챗봇: <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>

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'한국저작권위원회, KCC한빛체' 글꼴로 작성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5년 12월)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